

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점용허가

기준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

의 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8. 11. 24

발 의 자 : 충법표 의원 외 6인

□ 주 문

최근 들어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 축산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축산사료용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류하천 부지를 이용한 사료용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 건의함

□ 건의내용

- 유류하천 부지를 이용한 사료용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

붙 임 :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완화 건의문